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2015년~2017년)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본인 및 세대의 시정촌민세의 과세상황과 합계소득금액 등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 2015년·2016년도는 제1등급·제2등급에 해당하는 분에게 새롭게 공적 비용에 의한 보험료 경감 강화를 실시합니다. 2017년도부터는 한층 더 확대하여 제1등급부터 제4등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험료 경감 강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개호보험료(연간 금액)의 계산 방법

기준이 되는 월액 보험료 6,758엔 × 12월 = 연간 금액 81,096엔 (기준 액수)

기준액수(81,096엔)(연간 금액) × 소득에 따른 비율(0.50~2.00)

보험료 등급	대 상 자		2015년·2016년도		2017년도(예정)	
			비율	연간 금액	비율	연간 금액
제 1 등 급	○노령 복지연금의 수급자로 본인 및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자		0.50	40,548엔	0.35	28,384엔
제 2 등 급	본인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	같은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수입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0.50	40,548엔	0.35	28,384엔
제 3 등 급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수입액이 120만엔 이하인 분	0.65	52,713엔	0.50	40,548엔
제 4 등 급		제2등급·제3등급 이외인 분	0.75	60,822엔	0.70	56,768엔
제 5 등 급	같은 세대 중에 시정촌민세의 비과세자가 있는 분	합계소득금액 + 과세연금수입액이 80만엔 이하인 분	0.85	68,932엔	0.85	68,932엔
제 6 등 급		제5등급 이외의 분	1.00	81,096엔	1.00	81,096엔
제 7 등 급	본인이 시정촌민세의 과세 대상자	합계소득액이 125만엔 이하인 분	1.10	89,206엔	1.10	89,206엔
제 8 등 급		합계소득액이 125만엔 초과 200만엔 미만인 분	1.25	101,370엔	1.25	101,370엔
제 9 등 급		합계소득액이 200만엔 이상 400만엔 미만인 분	1.50	121,644엔	1.50	121,644엔
제 10 등 급		합계소득액이 400만엔 이상 700만엔 미만인 분	1.75	141,918엔	1.75	141,918엔
제 11 등 급		합계소득액이 700만엔 이상인 분	2.00	162,192엔	2.00	162,192엔

※보험료는 3년마다 재검토됩니다. 다음은 2018년에 재검토됩니다.

노령복지 연금

국민연금이 발족한 1961년 4월 시점에서 거출연금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금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191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세 대

4월 1일(연도 도중에 자격을 취득한 분은 자격을 취득한 날) 시점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입니다.

과세연금 수입액

노령·퇴직연금 등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 연금을 말하며, 유족·장애연금 등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된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계소득 금

전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의 특별공제나 손실 등에 걸리는 이월공제를 실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급여의 경우에는 급여소득공제액,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등 공제액